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소득법 59의4 ⑧)

구 분	공 제 율	
	2021년	2022년
1천만원 이하	20%	15%
1천만원 초과분	35%	30%

★'21.1.1.~21.12.31.에 기부하는 분에 한해 적용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현행유지(소득법 164의3)

◎ 상용근로소득 매 반기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최종 국회 통과 못하여 현행 유지하기로 함.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확대(소득령 별표3의3)

2022년 01월 01일부터
① 건강 보조식품 소매업
② 자동차 세차업
③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④ 공구 소매업
⑤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⑥ 중고 가구 소매업
⑦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⑧ 모터사이클 수리업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신설(소득법 81의14, 법인법 74의2)

◎ 대상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산입하여 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명세서를 미제출·불성실 제출

◎ 가산세액

-미제출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전체 × 1%

-불성실제출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중 명세서상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금액× 1%

□ 성실신고 확인제 등 적용대상 소규모법인 범위 확대(법인령 42 ②)

◎ 주된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인 경우 또는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70%이상 → 50%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합리화(소득법 81의2, 법인법 75)

◎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의 신설

· 계산식 MAX [①, ②]

① 산출세액×5%

② 수입금액×0.02%

□ 소득세 중간예납 소액 부정수 기준금액 조정(소득법 86)

◎ 중간예납세액 30만원 미만 →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

□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소득령 12)

◎ 적용대상 차량 범위 확대

-적용대상 : 종업원의 소유차량 → 종업원이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포함

□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1년 유예

◎ 2023.01.01.

□ 1세대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 실지거래가액 9억원 → 12억원

## <부가가치세법>

-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2, 부가령84 ②)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의 한도

구 분	과세표준	한도율			
		음식점업		이외 업종	
		2023년까지	2024년부터	2023년까지	2024년부터
개인사업자	1억원 이하	65%	50%	55%	50%
	2억원 이하	60%		45%	
	2억원 초과	50%	40%	40%	
법인		40%	30%	40%	30%

◎ 적용기한 : 2023.12.31.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6)

·공급가액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 그 발행금액의 1.3%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 한도. 다만,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000만원 한도)을 공제

◎ 적용기한 : 2023.12.31.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개선(부가법 48 ③·66 ①)

◎ 제외 사유 확대

-납부할 세액 30만원 미만 → 50만원

-재난등의 사유로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국세징수법 제13조 ①의 사유)

-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경우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부가령 68, 소득령 211의2)

◎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확대

종전	개정	
직전연도 공급가액 (총수입금액) 3억원 이상	직전연도 공급가액(총수입 금액) 2억원	직전연도 공급가액(총수입 금액) 1억원
	2021년에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을 포함)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 단하여 2022년 7월 1일 이후 재 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022년에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을 포함)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 단하여 2023년 7월 1일 이후 재 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직전연도 공급가액(총수입금액) 2억원 이상 → 1억원 이상

★ 2021년에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22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는 2억원을 적용하며, 2022년에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1억원을 적용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부가법 47, 소득법56의3, 부가령 89, 소득령 116의4)

◎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확대

- 공제대상 :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

- 공제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당 200원

- 공제방식 : 부가가치세·소득세에서 공제

- 적용기한 : 2022.07.01.~2024.12.31.

□ 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부가령 75)

◎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 발급 → 1년 이내

□ **선발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특례 요건 완화(부가법 §7 ③)**

종전	개정
①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②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 30일 이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내에 도래하는 경우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 확대(부가법 70 ①)**

종전	개정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된 경우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 **매입처별 매입세액 합계표 관련 가산세 추가(부가법 60 ⑤)**

◎ 매입처별 매입세액 과다신고에 대한 가산세 대상 추가  
-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 **일괄 공급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안분기준 보완(부가법 29 ⑨)**

◎ 안분계산 예외 신설  
- 다만, 사업자가 구분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만한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다른 법령에서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정한 경우
-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등

### <조세특례제한법>

□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10·24)

◎ 국가전략기술 : 국가경제안보 목적상 중요한 기술로 경제·사회적 안보가치, 산업 파급효과가 큰 기술

- R&D 비용에 대한 공제율

R&D 비용	대	중견	중소
국가전략기술	30~40%		40~50%

- 시설투자에 대한 공제율

시설투자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국가전략기술	6%	8%	16%	4%

★ '21.7.1.~24.12.31.까지 R&D 비용을 지출하거나 시설을 투자하는 분에 대해 적용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중소·중견기업 취득 지식재산 추가(조특령 21)

◎ 중소·중견기업이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는 특허권 등

- 내국인이 자체 연구개발하여 최초로 설정등록받은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는 제외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

◎ 생계형 창업기준 완화

연간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 연간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

◎ 적용기한 연장 : 2024.12.31.

□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9의7)

◎ 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 공제금액 100만원 2021년~2022년 한시 상향

구 분		중소		중견		대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청년· 장애인등	종전	1,100	1,200	800		400	
	개정	1,100	1,300	800	900	400	500

◎ 적용기한 연장 : 2024.12.31.

★ '21.12.31. 및 22.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증가 분에 대해 적용

□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법 29의3)**

◎ 경력단절 인정기간 요건 완화

퇴직 후 3년 이상 15년 이내 →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의4)**

◎ 사후관리 규정 신설

상시근로자 감소 시 잔여기간 공제 배제 → 공제세액 납부 추가

◎ 적용기한 연장 : 2024.12.31.

□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령 96의3)**

◎ 대상 임차인 범위 확대

종 전	개 정
① 20.1.31.이전부터 계속 임차하여 영업목적으로 사용 중	① 21.6.30.이전부터 계속 임차하여 영업목적으로 사용 중
② 사행정 업종·과세유흥장소 등을 경영하지 않은 자	②
③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③ (좌 동)
④ 사업자등록을 한 자	④
(추 가)	⑤ 폐업 전 ①~④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21.1.1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경우의 폐업한 임차소상공인

◎ 적용기한 연장 : 2020.1.1.~2022.06.30.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조특법 8의4)**

◎ 대상 임차인 범위 확대

-21년 발생한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2년(직전 과세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으로 확대

-결손금 소급공제 순서 : 직전전 과세연도의 납부세액에서 먼저 공제

★'21.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한하여 적용

□ 중소·중견기업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9의6 ①)

◎ 청년에 대한 감면을 상향

종 전		개 정		
중소	50%	청년	중소	90%
			중견	50%
중견	30%	그 외	중소	50%
			중견	30%

◎ 적용기한 연장 : 2024.12.31.

□ 주요 적용기한 연장

	종전기한	개정기한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조특법 10의2)	2021.12.31.	2023.12.31.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2)	2021.12.31.	2023.12.31.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조특법 12의2)	2021.12.31.	2023.12.31.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2의3)	2021.12.31.	2024.12.31.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2의4)	2021.12.31.	2024.12.3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조특법 16의2)	2021.12.31.	2024.12.3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조특법 16의3)	2021.12.31.	2024.12.3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6의4)	2021.12.31.	2024.12.31.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조특법 19)	2021.12.31.	2024.12.3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 30)	2021.12.31.	2023.12.31.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30의3)	2021.12.31.	2023.12.3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104의24)	2021.12.31.	2024.12.31.

<그 외>

□ 주요 적용기한 연장(국기령 27의4)

◎ 납부지연가산세율의 인하

25/100,000(연 9.15%) → 22/100,000(연 8.03%)